

이 유

1. 당사자 주장

가. 신청인 주장

- 2020년 1월부터 본 건물 7~8미터 앞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·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,
- 전화 통화가 힘들 정도로 소음이 크고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하여 손님들이 가게 방문을 기피하고
- 신청인 건물의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어 시공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시공사는 본 건물 균열 및 누수 공사는 조치하였으나 이외 피해는 아무런 조치를 하여주지 아니하여 정신적, 영업 피해를 받았으므로 재정 신청합니다.

나. 피신청인 주장

피신청인은 소음 및 분진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였습니다.

1) 피신청인의 환경오염 방지조치

가) 저소음 공법의 사용

- 흙막이 공사는 소음 및 진동 방지를 위해 주열식 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- 철근콘크리트공사 역시,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시에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, ①외벽은 갱폼 시스템을 적용 조립 해체 시 소음을 최소화하였으며, ②거푸집 해체 시에도 단계별 해체방식의 저소음 AL폼 및 슬래브 드롭다운 방식을 적용하여,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시공하였습니다.

나) 방음·방진벽 설치
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청외 (주)○○○○와 2020.1.10.부터 2022.4.30.까지 가설울타리(방음벽)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, 이 사건 공사장 주변에 높이 10m의 방음방진벽(H-BEAM + RPF)을 설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. 또한 단지 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더 차단하기 위하여 이동식 방음벽 역시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다) 소음·먼지 방지를 위한 방음·방진막 설치

- 피신청인은 거푸집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·먼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, 공사 전반에 걸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, 갱폼 등에 모두 방진막을 설치하였습니다.

라) 건물 개구부 방음, 방진 천막 설치

- 피신청인은 내부 공사시 발생한 먼지의 외부 유출 방지는 물론, 방음을 위하여, 단지동 개구부에 모두 방음, 방진 천막을 설치하였습니다.

마) 기타 먼지 방지를 위한 조치

- 세륜시설, 살수차 운행

2)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의 부존재

가) 피신청인의 환경오염 방지조치 이행
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, 먼지 등 환경오염을 방지·회피하기 위하여 방음·방진벽, 방진막을 설치하고, 세륜 시설, 살수차 등을 운영하는 등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모두 이행한 후,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- 이에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해, 신청인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.

나) 환경 관련 행정제재가 없었음
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, 신청인 등의 민원으로 인하여, 몇 차례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 등과 관련 점검을 받았으나, 점검 결과 피신청인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, 이에 관한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.

다) 다양한 소음 발생원의 존재

- 신청인 거주 주택은 ○○구 대로변에 위치하므로 상시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대형차량 운행시간대(06:00~23:00)에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침해가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.
- 이상과 같이 신청인 거주 지역은 인근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이외에도 ○○구역 재개발현장(2,389세대, 26개동)이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하여 다수의 소음·진동 발생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·진동이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되어 신청인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라) 소결

-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, 피신청인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,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신청인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. 또한 신청인 거주 주택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공사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
3) 손해배상 대상 제한의 필요성

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·진동·먼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, 그 범위의 제한이 필요합니다.

가) 평일 주간(07:00 ~ 18:00)에 거주하지 않은 사건은 이 사건 분쟁이 될 수 없습니다.

나) 또한 신청인이 실제 거주에 따라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정도가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.

4) 결론

가)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소음·진동, 먼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는바,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·분진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.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.

나) 또한 신청인들에게 일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, 이는 공사가 진행되는 평일 주간에 거주한 시간, 공사 진행 전부터 신청인 주택에 거주 여부에 국한되는 손해라 할 것인바, 손해배상 범위 등의 제한이 필요합니다.

3. 사실조사 결과

가. 분쟁지역 현황

- 분쟁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며 ○○로에 가까이 있어 배경소음이 높은 환경이다.

나. 신청인 영업장 현황

- 위 치 : ○○구 ○○로, 1층
- 용도지역 : 제2종일반주거지역

번호	성 명	상 호	주 소	영업개시일
1	○○○	○○○○○	○○구 ○○로, 1층	

다. 피신청인 공사 현황

- 공사명 : ○○구 ○○동 주택 신축공사
- 위치 : ○○구 ○○동
- 구역면적 : 8,070 m^2 (연면적 87,070 m^2)
- 규모 : 지하6층, 지상24~28층 4개동 및 부속동, 977세대
- 공사기간 : 2020.3.~2022.12.
- 시공사 : (주)○○건설

라.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결과

- 시공사를 상대로 건물균열, 소음 피해민원이 관할구청(건축과, 환경과)에 30차례 제기되어 소음발생주의 등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다.

마. 현장 조사내용

- 신청인은 인근 공사장의 소음,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,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음.
 - ① 작업 소음·진동과 비산먼지로 가게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였음.
 - ② 작업장 소음·진동과 덤프트럭 등이 오가며 나는 비산먼지에 단골 고객들이 기피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.
- 공사장 부지경계선에 높이 10m의 RPP방음벽이 설치되었음
- 공사장 출입구가 신청인 영업장 근처에 있어 공사차량이 출입할 때 개폐되었음

3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

가. 소음·진동·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 평가

- 소음·진동·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를 평가하지 않았다.

나. 영업손실 피해 평가

- 현지조사와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 및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의 환경적 위해요소가 수인한도를 넘어 신청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영업손실이 발생할 정도의 피해인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다.
- 환경적 위해요소가 발생되기 이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매출 자료를 파악한 후, 환경적 위해요소 평가기간(2020.3. ~ 2021.12.)의 실제 매출 자료를 비교하여 매출의 변화(감소) 유무를 판단하였다.

[표 1] 월별 매출 현황

2020	1	2	3	4	5	6	7	8	9	10	11	12	합계	월평균
신용카드													8,336,325	
현금													76,792	
소계													8,413,117	
월평균대비변화율	2.3%	-4.0%	9.1%	5.4%	22.9%	0.1%	-3.3%	-3.6%	-0.9%	-9.5%	-7.2%	-11.3%		100%
2021	1	2	3	4	5	6	7	8	9	10	11	12	합계	월평균
신용카드													6,213,454	
현금													44,833	
소계													6,258,288	
월평균대비변화율	2.1%	-1.1%	9.6%	24.8%	19.9%	-5.2%	-4.4%	-6.8%	-22.5%	4.1%	-7.4%	-13.1%		100%

[표 2] 월매출의 변화 여부

신청인	2020	4	5	6	7	8
변화율		5.4%	22.9%	0.1%	-3.3%	-3.6%
신청인	2021	4	5	6	7	8
변화율		24.8%	19.9%	-5.2%	-4.4%	-6.8%
주변상권	2021	4	5	6	7	8
변화율		7.4%	4.5%	6.7%	1.2%	1.9%
주변상권 비교값		-2.0%	18.3%	-6.6%	-4.5%	-5.5%

-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환경위해요소가 발생된 2020년 4월부터 8월의 변화와 2021년 주변상권의 월 변화율 비교할 때 5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매출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, 평균매출손실은 -4.65%로 산정되었음
-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환경위해요소는 2020.04~08월(5개월)동안 발생되었고, 피해기간 중 매출손실이 발생되지 않은 2020년 5월을 제외한 4개월을 인정 피해기간으로 인정하며, 동 기간 동안 피해일수 (총 54일중 5월에 발생한 14일을 제외한 40일)를 고려하여 피해비율을 적용하기로 함

부호	내용	수량
A	주변상권의 주간 이용고객 평균비율	66.2%
B	전체공사기간중매출감소에대한공사장소음의피해비율=40일/122일 (2020년4~8월)	33.6%
C	도로점유, 이용객의 접근제한 조정(100%-30%)	70.1%
D	공사장 소음기여율 = A×B×C	15.6%

○ 영업손실액 산정

상호/대표자	○○○○/ ○○○
사업자등록번호	
업태/ 종목	음식점업
피해기간	2020.04~2020.8(5개월)
기준매출액	8,413,117원/월
매출감소율	4.65%
변동비율	구체적인고정비/변동비를알수없음 2021년도귀속년도[김밥및간이음식점업, 코드:552108]을준용하여12.5%(일반율)적용
소음기여율	15.6%
영업손실액	$\begin{aligned} & \text{기준매출액} \times \text{매출감소율} \times (100\% - \text{변동비율}) \times \text{소음기여율} \times \text{피해기간} \\ & = 8,413,117 \times 4.65\% \times 87.5\% \times 15.6\% \times 5\text{개월} \\ & = 267,000\text{원} \end{aligned}$

4. 판단

- 신청인 사업장의 매출하락이 피신청인 공사의 소음으로 인해 일부 영업 손실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.

5. 배상수준 검토

가. 배상책임

- 피신청인 (주)○○건설은 『환경정책기본법』 제7조 (오염원인자 책임원칙) 및 제44조(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)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

나. 배상범위

- 또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받은 신청인 ○○○에게 배상한다.

다. 배상금액

○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배상액 267,000원, 재정신청 수수료 800원을 추가하여 합계 267,800원이다.

- 공사장 소음·진동에 따른 영업손실 피해 : 267,000원

- 재정신청 수수료 : 800원

▶ $267,000 \times 0.3\%$
= 800원(10자리 반올림)

6. 결론

본 위원회에서는 관련서류, 현지조사결과, 전문가 의견,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